

전자송달 이용신청서 ([]신규 []변경 []철회)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
1. 신청인	성 명	주민등록번호	
	주 소 (전화번호 :)		
2. 전자송달 관련 기재사항	전자우편주소		
	휴대전화번호		

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3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이용하기 위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위 임 장

위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사람에게 전자송달 이용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.

위 임 자(신청인) (서명 또는 인)

위임받은 사 랑	성 명	주민등록번호	위 임 자와 의 관 계
	주 소 (전화번호 :)		

준비하실 사항 : 위임자의 신분증, 위임장,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, 대리인의 신분증

유 의 사 항

- 전자송달은 납부고지서, 원천공제통지서(채무자용),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, 독촉장 등 의무상환액의 고지, 통지 및 독촉에 관한 서류를 종이문서 대신 정보통신망(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및 이와 연계된 정보통신망)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방식입니다. 이 경우 전자송달이 이루어지면 전자송달한 서류명과 송달 사실을 전자우편(이메일) 또는 휴대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.
-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 서류가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, 이 때 적절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자가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작 성 방 법

- 신규·변경·철회: 해당란에 "√" 표시를 합니다.
- 전자우편주소는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본인의 전자우편(이메일)주소를 적습니다.
-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할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고, 철회할 경우에는 빈 칸으로 둘 수 있습니다.
- 위임장: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.